##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2

발의연월일: 2020. 9. 22.

발 의 자 : 김미애·하영제·이양수

이종배 · 김정재 · 전주혜

서정숙 · 조경태 · 전봉민

권성동・구자근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0대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 현장에서 8세 딸이 "안방에서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나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했음.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이 부모와 동거 중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 인 폭력 역시 명백한 학대로서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 이 있음. 한편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가령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8세 미성년자의 경우 국가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에 해당하 지 않은 탓에 퇴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그뿐만 아니라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 및 장애아동 등이 더이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만 18세일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로 인해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임.

이에 아동이 가정에서 목격하는 가정폭력 등 간접적인 폭력 또한 학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제7호,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4호).

####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18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신체적"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신체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제1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간접적인 학대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u>18세</u> 미만인 사	1 <u>19세</u>
람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	7
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u>신체적</u> ·	직접 또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는 간접적인 신체적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	
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 11. (생 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등) ①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	
호대상아동의 연령이 <u>18세</u> 에	<u>1</u> 9세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	

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 다.

## ② ~ ④ (생 략)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신 설>

5. ~ 11. (생략)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1. ~ 3. (현행과 같음)
4.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
는 간접적인 학대행위
5. ~ 11. (현행과 같음)